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4. 30 선고 2022가단59092(본소), 2022가단59108(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가문일(소송구조)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직

담당변호사 김영주

변 론 종 결 2024. 3. 12.

판 결 선 고 2024. 4. 30.

주 문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382,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2024. 4. 3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44,293,4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가. 인정되는 대여금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2012. 5. 29. 선이자 900,000원을 뺀 29,100,000원, 이자 월 3%
- 2) 2013. 8. 8. 10,000,000원
- 3) 2014. 8. 13. 2,600,000원
- 4) 2014. 10. 16. 2,000,000원
- 5) 2016. 10. 13. 7,300,000원

나. 2012. 5. 29.자 대여금의 원금

원고는 2012. 5. 29.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900,000원을 공제하였는바, 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므로, 그 중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 있는 727,500원(= 29,100,000원 × 0.3 × 1/12)이 1개월 이자에 충당되고, 나머지 172,500원은 원금

3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결국 채무원금은 29,827,500원이 남게 된다.

다. 나머지 대여금의 이자 약정

원고는 위 가. 2) 내지 4)항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월 3%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23. 8. 8.자 10,000,000원의 차용증에 비록 이자율의 기재는 없지만 ‘이자는 후불’로 매월 8일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9.경부터 매월 250,000원 가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13. 8. 8.자 1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25%의 이자율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250,000원씩을 지급하다가 2014. 8. 9. 1,2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2,600,000원을 차용한 2014. 8. 13. 이후 2014. 9. 30. 400,000원, 2014. 10. 6. 500,0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한 2014. 10. 16. 이후 2014. 10. 31. 450,000원, 2014. 11. 7. 350,000원, 2014. 12. 1. 500,000원, 2014. 12. 16. 500,000원, 2015. 1. 7.부터 2015. 3. 11.까지 매월 850,000원, 2015. 4. 13.부터 2015. 12. 17.까지 매월 8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2016. 10. 12. 이후 원고에게 매월 600,000원에서 700,000원을 지급하다가, 10,000,000원을 지급한 2017. 3. 20. 이후에는 매월 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나머지 대여금에 대하여는 월 3%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4. 8. 28.자 대여금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8. 28.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8. 28. 원고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증이 작성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다른 돈과 달리 위 돈만 현금 등으로 지급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는 2013. 8. 8. 대여한 10,000,000원, 2014. 8. 13. 대여한 2,600,000원, 2016. 10. 13. 선이자 100,000원을 공제하고 대여한 7,300,000원을 더하여 2016. 10. 12. 20,000,000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위 6,000,000원도 그와 같이 기존에 대여하고 원고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잔금에 대하여 받은 차용증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28. 6,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5. 29. 대여금 29,827,500원을 이자 연 36%, ② 2013. 8. 8. 대여금 10,000,000원을 이자 연 25%, ③ 2014. 8. 13. 대여금 2,600,000원을 이자 연 36%, ④ 2014. 10. 16. 대여금 2,000,000원을 이자 연 36%, ⑤ 2016. 10. 13. 대여금 7,300,000원을 이자 연 36%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인정한다(이하 위 각 대여금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대여금’이라 한다).

2. 판단

가. 변제 총당

위에서 든 각 증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변제내역 기재 각 돈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의 이율로 제한한 이 사건 제1대여금은 별지 총당액계산표1 기재와 같이 2013. 7. 29. 피고가 30,0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까지 모두 변제되고도 2,813,206원이 초과 변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 3, 4대여금(이 사건 제3, 4대여금은 당시 시행되던 이자제한법상 연 25%의 이율로 제한함)은 별지 총당액계산표2 기재와 같이 2016. 5. 16. 피고가 1,5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원금까지 모두 변제되고 1,101,037원이 초과 변제되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의 이율로 제한한 이 사건 제5대여금은 별지 총당액계산표3 기재와 같이 피고가 대여일 이후 2016. 11. 12.부터 2017. 3. 20.까지 변제함으로써 4,568,173원이 초과 변제되었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가 20,0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이후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본소로 구하였는바, 위 일자에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기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이자로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러한 제한초과의 이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참조),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피고가 이미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대여금의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각 대여금 부분에 대한 효력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준소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제5대여금도 모두 변제되었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따라서 피고가 2013. 7. 29. 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1대여금을 초과 변제한 2,813,206원, 2016. 5. 16. 1,5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2, 3, 4대여금을 초과 변제한 1,101,037원,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에도 그 이후 변제한 2016. 6. 25.자 800,000원, 2016. 7. 29.자 18,000,000원, 2017. 3. 20. 1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제5대여금을 초과

변제한 4,568,173원, 이 사건 제5대여금까지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그 이후 2017. 3. 21.부터 2020. 4. 30.까지 지급한 금액 합계 11,100,000원은 모두 부당이득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인정 금액을 넘는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금액 합계 38,382,416원(= 2,813,206원 + 1,101,037원 + 800,000원 + 18,000,000원 + 4,568,173원 + 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에게 2022. 12. 13.부터 원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4.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반소장을 송달받기 전에 피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3.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

별지